



흔히 사용되는 법률용어 해설 ③

공물

행정주체에 의하여 직접으로 공공의 목적에 공용되는 개개의 유체물을 말한다. 공물은 공용되는 목적에 따라 공공용물·공용물 및 보존공물로, 그 실체의 성립과정에 따라 자연공물과 인공공물로, 소유권자와 관리주체가 동일인인지의 여부에 따라 자유공물과 타유공물로 구분된다.

공공용물

도로·하천·공원·항만 등이나 그의 부속물건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일반공중의 공동사용에 공용되는 물건을 말한다.

공용물

행정기관의 건물·집기·비품·공무원의 관사 등과 같이 직접으로 공용목적을 위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되는 물건을 말한다.

보존공물

현실적으로 공공용이나 공용에 제공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그 물건 자체를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보존공물은 국유 또는 공유인 것도 있으나 사유물인 경우가 많으며, 사유의 보존공물은 공물로서 여러 가지의 공용제한을 받는데, 국보 기타의 중요문화재 등이 그 예이다.

공유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공동소유라 하며, 공유소유의 형태로는 공유·합유·총유가 있다. 공유는 공동소유자 사이에 아무런 인적 결합관계 내지 단체적 통제가 없고, 목적물에 대한 각 고유자의 지배권한은 서로 완전히 자유·독립적이며, 다만 목적물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데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각자가 가지는 지배권능은 지분이라고 불리며, 그 처분은 자유이고, 또한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공동소유관계를 해소하여 각자의 단독소유로 전환할 수 있다.

합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의 그 공동소유를 말한다. 즉 합유는 조합재산을 소유하는 형태이며, 합유에 있어서도 공유와 같이 합유자는 자분을 가진다. 그러나 합유자의 자분은 자유로이 처분하지 못하는 점에서 공유자분과 다르다.

총유

법인 아닌 사단의 공동소유형태를 말한다. 총유의 주체는 법인이 아닌 사단 즉, 법인격 없는 인적 결합체이며 '권리능력없는 사단', '宗中'이 그 예이다. 부동산의 총유는 등기하여야 하며, 등기신청은 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하여야 한다.

공포

법령을 일반 국민에게 주지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법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법령은 공포하여야 시행할 수 있으므로 공포는 법령의 효력발생 요건의 하나이다.

공표

일정한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에 그 의무위반 상황을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표는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법적효과를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상태의 존부를 다중에게 알리는데 그치는 단순한 사실행위로서의 통지에 불과하나, 직접적으로 상대방의 수치심과 사업상 불이익 등을 불러 일으킬 사회적 제제 내지 명예벌적인 의미를 가지는 행정상의 제재에 해당한다.

[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도문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의 성명, 연령, 직업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그 형이 확정된 후 이를 게재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죄를 범한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